

◆ 해상법규 개정 내용 ◆

◆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시행 21. 1. 5]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p>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 3. (현행과 같음)</p>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 20. 12.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19. 4. 11. 선고, 2017헌가30)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6호, 2020. 12. 8., 일부개정]
<p>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p>	<p>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p>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 1.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p>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부속선의 <u>척수(隻數)</u></p> <p>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u>척수</u>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어업의 종류</p> <p>2. 어선의 규모</p> <p>3. 부속선의 <u>선박 수</u></p> <p>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p> <p>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u>선박 수</u>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해양경비법」 [시행 21. 3. 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추가하여 그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 대테러 작전의 수행 및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예방·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해양경비법 [법률 제17798호, 2020. 12. 29.,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선박등”이란 「<u>선박법</u>」 <u>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u>(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p>

<p>래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래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p> <p>11. (생략)</p>	<p>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래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p> <p>11. (현행과 같음)</p>
<p>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시행 21. 3. 30]</p> <p>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p> <p>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p> <p>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 1]</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1. 1. 5]

<p>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8호, 2020. 3. 3., 일부개정]</p>	<p>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p>
<p>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p> <p>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p> <p>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1. (생략)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投索銃)	1. (현행과 같음)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시행 21. 3. 30]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77호, 2021. 3. 30., 일부개정]
<신설>	<p>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p> <p>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u> 2. <u>해양 대테러 조직·인력·시설·장비의 확충·관리</u> 3. <u>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u> 4. <u>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교환</u> 5. <u>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u> 6. <u>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u>

◆ 「경찰관 직무집행법」(1) [시행 21. 1. 1]

[18. 12. 24. ⇒ 20. 12. 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는 한편,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

하고,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7688호, 2020. 12. 22., 일부개정]
<p>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5. ~ 7. (생략)</p>	<p>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p> <p>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p> <p>2의2. 범죄피해자 보호</p> <p>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p> <p>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p> <p>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p> <p>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p>
<p>제8조의2(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시행 21. 3. 23]</p> <p>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8조의3(국제협력)</p> <p>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1. 3. 23]</p>

◆ 「경찰관 직무집행법」(2) [시행 21. 1. 1]

[20. 12. 22. ⇒ 20. 12. 22]

국가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경찰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

◆ 「해양과학조사법」[시행 21. 6.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p>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제17057호, 2020. 2. 18., 일부개정]</p>	<p>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일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u>대한민국 국민</u>,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p> <p>① <u>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u>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u></p>

	<p><u>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u>하여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p>

◆ 「해사안전법」 [시행 21. 4.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나.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3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라.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제29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

해사안전법 [법률 제17056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사안전법 [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8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	제8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p>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① ~ ⑤ (생략)</p> <p>⑥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1. 10. 14]</p> <p>⑦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1. 10. 14]</p> <p>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1. 10. 14]</p>
<p>제18조(처분기관의 허가등) ① (생략)</p> <p>②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신설></p>	<p>제18조(처분기관의 허가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1. 10. 14]</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시행 21. 10. 14]</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p>

<p><신 설></p> <p><신 설></p>	<p>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1. 10. 14]</p> <p>⑦ 해양수산부장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1. 10. 14]</p> <p>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1. 10. 14]</p>
<p>제18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의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③·④ (생략)</p> <p>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진단서 제출, 협의·재협의 요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해양수산부장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p>	<p>제18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의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1. 10. 14]</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1. 10. 14]</p> <p>⑥ 해양수산부장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1. 10. 14]</p> <p>⑦ 해양수산부장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1. 10. 14]</p>

<p>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p> <p>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견서의 작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1. 10. 14]</p> <p>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1. 10. 14]</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재협의 요청, 검토의견·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1. 10. 14]</p>
<p>제29조(비용징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비용 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9조(비용징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p> <p>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p> <p>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협에 처한 선박 또는</p>

<p><신 설></p> <p><신 설></p> <p>4. (생 략)</p> <p>② (생 략)</p>	<p>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p> <p>3의2.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u></p> <p>3의3. <u>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u></p> <p>4.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제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시행 21. 10. 14]</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 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9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p> <p>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p>	<p>제49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에 따라 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 ⑧ (생략)</p>	<p>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략)</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 제4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4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 나.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p>

<p><신 설></p>	<p>된 경우</p> <p>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p> <p>가. 제4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4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p> <p>나.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다.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67조(좁은 수로등) ① ~ ④ (생략)</p> <p>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월선(追越船)은 좁은 수로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추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추월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p> <p>⑥·⑦ (생략)</p>	<p>제67조(좁은 수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앞지르기 하는 배는 좁은 수로등에서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앞지르기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71조(추월) ① 추월선은 제1절과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舷燈)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추월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p>	<p>제71조(앞지르기) ① 앞지르기 하는 배는 제1절과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舷燈)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앞지르기 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p>

<p>떻게 변경되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① ~ ④ (생략)</p> <p>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p> <p>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p> <p>2. (생략)</p> <p>⑥ (생략)</p>	<p>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p> <p>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① ~ ③ (생략)</p> <p>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67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p>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p> <p>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p> <p>3. 추월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p> <p>⑤ ~ ⑦ (생략)</p>	<p>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67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p>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p> <p>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p> <p>3.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앞지르기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97조의2(해양안전현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상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현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현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현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p>제97조의3(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p>	<p>제97조의3(해양안전현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현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현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현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97조의4(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p>
<p>제9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p>	<p>제9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p>
<p>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1. 10. 14]</p>

◆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1. 1. 5]

<p>해사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p>	<p>해사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p>
<p>제13조(정선명령·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음향·수기(手旗)·발광(發光)·기류(旗旒) 신호·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3조(정선명령·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음향·수기(手旗)·발광(發光)·기류신호(깃발신호)·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p>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1. 2. 19]

<p>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3호, 2020. 8. 28., 타법개정]</p>	<p>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p>
--	--

<p>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p> <p>4. (생략)</p>	<p>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p> <p>4. (현행과 같음)</p>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1. 1. 1]

해양수산부장관 ⇒ 관리청

(§4~12, 17, 23~27, 30, 32, 34. 35. 37~38, 40~43, 45, 47~49, 53, 59)

<p>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p>	<p>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p> <p><신 설></p> <p>3. ~ 15.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p> <p>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p> <p>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p> <p>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p> <p>3. ~ 15.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제27조(과징금 처분) ①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p>

1. ~ 3. (생략)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③ 관리청 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제5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 이 부과·징수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 1.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내항어선(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의 출입 신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내항어선(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의 출입 신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 에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 에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 에 제출할 것

<p>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p>	<p>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p>
<p>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3. (생략)</p>	<p>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p>	<p>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p>
<p>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 ④ (생략)</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p>	<p>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p>

<p>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p> <p>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방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p> <p>2. (생략)</p>	<p>아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p> <p>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관리청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방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p>	<p>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p>

<p>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11조(예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p> <p>1.·2.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11조(예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1. (생략)</p> <p>12.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p> <p>② ~ ⑤ (생략)</p>	<p>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관리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② 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p> <p>④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p> <p>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p>
---	--

<p>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하였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p> <p>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p> <p>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	---

<p>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p>
<p>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p> <p>1. ~ 3. (생략)</p>	<p>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하 “무역항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1.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관서 또는 해양수산관서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3. (생략)</p>	<p>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1.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 (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3. (현행과 같음)</p>
<p>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 34. (생략)</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p>	<p>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 34. (현행과 같음)</p> <p>③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p>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 6. 4]

◇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8조).
- 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으로 정함(제13조).
- 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제14조).
- 마.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 사.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21조).
- 아.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시행 20. 6. 4]**

◇ 제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 6. 4.)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구 수정 등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섹터와 관제통신용 채널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7조)
- 나. 기존 규칙에서 사용하던 “교차수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칭을 “선박교통관제구역 경계”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수정(제8조)
- 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의견 추가(제10조제4호)
- 라. 선박운항통제의 조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풍해일·태풍으로 명확히 하고,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를 추가(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마. 무역항을 제외한 해역을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절차 중 3단계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4단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12조제2항)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은 삭제하고, 시설관리자의 자격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기준에 맞게 수정(제17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1. 1. 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p>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생략)</p> <p>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p> <p>가. (생략)</p> <p>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照度)를 갖춘 조명시설</p>	<p>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밝기)를 갖춘 조명시설</p>
<p>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추는 것</p> <p>8. ~ 1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추는 것</p> <p>8. ~ 1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유·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p>	<p>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유·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p>

<p>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p> <p>3. ~ 6. (생략)</p> <p>7. 유·도선이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p>8. ~ 12. (생략)</p> <p>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汽笛) 또는 호중(號鐘)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p> <p>가. (생략)</p> <p>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p> <p>다. (생략)</p> <p>14. (생략)</p>	<p>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p> <p>3. ~ 6. (현행과 같음)</p> <p>7. 유·도선이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p> <p>8. ~ 12. (현행과 같음)</p> <p>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汽笛) 또는 호중(號鐘)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해야 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p> <p>다.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1. 10. 14.]

[19. 8. 20 → 21. 4.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난구조 관련 수당·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급 구조본부 소속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함(제6조).

나. 수난구조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 법인 등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구조 참여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외의 수난구조 참여 민간인에 대한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함(제30조).

다.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30조의5 및 제44조의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11호, 2019. 8. 20.,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60호, 2021. 4. 13., 일부개정]
<p>제6조(각급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조 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의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에 각각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p>	<p>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생략)</p> <p>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④ ~ ⑥ (생략)</p> <p>⑦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현행과 같음)</p> <p>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조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0조의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p><신설></p>	<p>제30조의5(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p>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p>
<p>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생략)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p>②·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p>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1. 1. 5]

<p>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07호, 2019. 11. 12., 일부개정]</p>	<p>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p>
<p>제18조(예항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항(曳航)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p>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p>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 11. 1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9호, 2019. 7. 10.,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43호, 2020. 11. 12., 일부개정]
<p>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② (생략)</p> <p>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u>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u></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 「수상레저안전법」(1) [시행 20. 11.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332호, 2020. 5. 26., 일부개정]</p>
<p>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생략)</p> <p>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u>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개조·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u></p> <p>② <u>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③ <u>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u></p> <p>④ <u>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제48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u>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p>	<p>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p>

<p>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p> <p>2.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2의2.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p> <p>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p> <p>4.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p> <p>5.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의3. (생략)</p> <p><신설></p> <p>2. ~ 5. (생략)</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의3. (현행과 같음)</p> <p>1의4.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험운전한 자</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신설></p> <p>5. ~ 11의3. (생략)</p> <p>12.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p> <p><신설></p> <p>② ~ ⑦ (생략)</p>	<p>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p> <p>5. ~ 11의3. (현행과 같음)</p> <p>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p> <p>13.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수상레저안전법」(2) [시행 21. 1. 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332호, 2020. 5. 26.,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p>제33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제33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u>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2. (생략)</p> <p>3.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p> <p>② ~ ⑥ (생략)</p>	<p>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임시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 11.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선소 등에서 건조·개조·수리 중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시험운전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장비 등을 갖춰 관할 허가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임시운행허가 관서의 장은 7일간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에서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의 기간과 구역을 정하는 한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별 교육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91호, 2020. 11. 24., 일부개정]
<신 설>	제27조의2(임시운행허가)

	<p>① <u>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u>(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u>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운항 구역을 관할하는 <u>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이하 이 조에서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시운항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임시운항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p>② <u>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운항허가증을 내줘야 한다.</u></p> <p>③ <u>임시운항허가의 기간 및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허가기간: 7일</u>(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u>허가구역: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u> <p>④ <u>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u></p> <p>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 <u>별표 3 제2호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비교 : 가목 및 나목의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p> <p>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1. 2. 28)부터 시행한다.</p>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1) [시행 20. 8. 2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2020. 2. 28.,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p>제9조의2(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가. ~ 사.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략) 	<p>제9조의2(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양식산업발전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현행과 같음)
<p>제14조의2(항해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별표 7 제2</p>	<p>제14조의2(항해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별표 7 제2호</p>

<p>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은 제외한다.</p> <p>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p> <p>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p> <p>3. (생략)</p> <p>② (생략)</p>	<p>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은 제외한다.</p> <p>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p> <p>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2) [시행 20. 11.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시험운전을 위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10해리 이상 항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중 위험성이 높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운영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그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47호, 2020. 11. 27., 일부개정]
<p>제5조(수상안전교육) ①·② (생략)</p> <p>③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5조(수상안전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준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시행 21. 2. 28]</p> <p>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p>	<p>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p>

<p>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p> <p>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u>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u></p> <p>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u>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p>제16조(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16조(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 ①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u>”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p>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u>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임시운항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임시운항계획서 및 허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u> 한다.</p> <p>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증은 별지 제34호의4서식과 같다.</p>

<p>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p> <p>1. ~ 7. (생략) ② ~ ⑤ (생략)</p>	<p>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레저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p> <p>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3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별표 11] <신설 2020. 11. 27.>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블롭점프) 준수사항</p> <p>가. 에어매트의 공기주입구 및 표면,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p> <p>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p> <p>다. 점프대 위와 아래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p> <p>라. 이용자가 구멍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p> <p>마. 이용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주간에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 11. 27.>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수상레저사업(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만 주는 사업은 제외한다)	
항목	내용
사업장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구역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자격기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

		<p>(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15 경장승진, 18 해경] -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기구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구여야 하고,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기구여야 한다.
		<p>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p> <p>블록 점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프대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여야 한다. -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말한다)는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해야 한다. - 에어매트 주변의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의 앞쪽으로 5미터 이상, 양옆으로 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부표 등을 설치하여 그 공간을 표시해야 한다. -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해야 한다. -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p>워터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워터파크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폰툰(Pontoon) 등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워터파크와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인명구조용 장비 등	구명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17 경장·경감승진, 18 해경, 19 경감승진] - 구명조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안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터슬레드,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록점프)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며, 갖추어야 하는 안전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충격 흡수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할 것
	비상구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패러세일, 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

	<p>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13 해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 2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p>- 비상구조선은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p> <p>-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속도가 시속 20노트(knot)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경 1개 이상 · 구명튜브 5개 이상 또는 1자형 튜브 1개 이상 · 호루라기 1개 이상 ·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p>-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 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 안에 비상구조선을 적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표 중 계류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조정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두어야 한다. [[18 해경]]</p>
구명 튜브	<p>-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튜브를 갖추어야 한다.</p> <p>-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튜브를 갈음하여 스로 백(throw bag, 구명 구조 로프 가방)을 갖출 수 있다.</p> <p>- 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구명줄	<p>-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p>
예비용 노·상앗대	<p>-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p> <p>-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p>
통신 장비	<p>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소화기	<p>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p>
인명구조요원	<p>-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하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p> <p>-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 블롭점프 및 워터파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기구마다 각각 두어야 한다.
--	---

2.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

항목	내용
사업장 기준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 21. 4.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낙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별표 2(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를 준용하고 있으며, 시·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낙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시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시·도의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 및 낙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낙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강화된 낙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낙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8056호, 2021. 4. 13., 일부개정]
<p>제5조(낙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생략)</p> <p>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p>	<p>제5조(낙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p>

<p>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 2. 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어선 사고의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바다 등에서 낚시를 할 때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50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낚시어선의 선장에게 일정 기간의 승무경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하고, 바다 등에서 낚시를 할 때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3호, 2019. 6. 25.,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32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p>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p> <p>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p> <p>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일 것</p> <p>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추는 것</p> <p>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p> <p>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p>

<p><신 설></p> <p>②·③ (생략)</p>	<p>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u>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u></p> <p>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u></p> <p>부칙 제2조(낚시어선의 선장의 승무경력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까지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으로 한다.</p> <p>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u>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p>	<p>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p> <p>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u>1. 검정기관의 명칭</u></p> <p><u>2. 검정기관의 대표자</u></p> <p><u>3. 검정기관의 소재지</u></p> <p><u>4. 검정대상</u></p> <p><u>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u></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④ (생략)</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u>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u>과 <u>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u></p> <p>④ (현행과 같음)</p>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 2. 18.>**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안전·구명 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시행 2021. 2. 21]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1. 4. 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49호, 2020. 2. 18., 일부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6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

<p>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p> <p>② (생략)</p>	<p>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시행 2021. 10. 14]</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생략)</p> <p>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삭 제> [시행 2021. 10. 14]</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시행 2021. 10. 14]</p> <p>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p>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를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p>	<p>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p>

<p>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신 설></p>	<p>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남시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삭 제></p> <p>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0. 14]</p>
<p><신 설></p>	<p>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시행 2021. 10. 14]</p> <p>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6조(122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2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0. 14]</p>
<p>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1. 10. 14]</p>
<p>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2. ~ 5. (생략)</p> <p>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생략)</p>	<p>제25조(과태료) [시행 2021. 10. 14]</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p> <p>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p> <p>③ (현행과 같음)</p>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및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고,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려는 사람이 이수할 수 있는 통합형 안전교육을 신설하며, 연안체험활동 시 배치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수상구조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62호, 2017. 10. 1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50호, 2020. 12. 23., 일부개정]</p>
<p>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p> <p>2.·3. (생략)</p>	<p>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p> <p>2.·3.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7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p> <p>① ~ ③ (생략)</p> <p>④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신 설> <신 설> ⑤ (생 략)</p>	<p>3. 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5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해제: 2014년 8월 22일 2.·3. (생 략) 4.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2014년 8월 22일 5. 제8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2014년 8월 22일</p>	<p>제1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삭 제>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p>

별표 2의 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라.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p>	수상·수중안전 수칙	8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별표 2의 비교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제11조제4항"을 "영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명구조요원"을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교육 구분</p>	<p>수상형 [], 수중형 [], 일반형 [], 통합형 []</p>
------------------	---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7일"로 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1. 1. 5]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p>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p> <p>1. 2. (생략)</p> <p>3. 2007년11월 4 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p> <p>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p> <p>(1)·(2) (생략)</p> <p>나.·다.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p> <p>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p> <p>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p> <p>3. 2007년11월 4 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p> <p>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나.·다.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생략)</p> <p>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龍骨)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p>	<p>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p>

◆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 9. 3]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3호, 2020. 8. 28.,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5호, 2020. 9. 3., 일부개정]</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p> <p>8. ~ 10. (생략)</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p> <p>8. ~ 10. (현행과 같음)</p>
<p>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 측정·개측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③ (생략)</p>	<p>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 ~ ③ (생략)</p> <p>④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생략)</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p>	<p>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p>

<p>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 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p>	<p>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 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p> <p>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 (생략)</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p> <p>8. ~ 20. (생략)</p> <p>② (생략)</p>	<p>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p> <p>8. ~ 2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만재출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p>	<p>제41조(만재출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p>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p> <p>1. (생 략)</p> <p>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p> <p>3. ~ 5. (생 략)</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p> <p>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p> <p>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신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p> <p>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p> <p>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p> <p>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흡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p>
<p>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② (생 략)</p> <p>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p>	<p>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p> <p>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p> <p>1. 무동력어선</p> <p>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p> <p>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p> <p>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p> <p>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p> <p>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p> <p>② 삭제 <2017. 6. 28.></p> <p>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p>

<p>“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어선의 안전운항, 불법 어업·영업의 단속, 수산자원의 조사,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사 및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사 5.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p>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 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가. ~ 라. (생략) 2. ~ 10. (생략)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 14. (생략)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 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 14.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3. (생략) <p>② ~ ④ (생략)</p>	<p>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2조(예비검사)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p>	<p>제52조(예비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p>

<p>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 ⑦ (생략)</p>	<p>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경</p> <p>3.·4.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p> <p>3.·4.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p> <p>1. ~ 9.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p> <p>③ (현행과 같음)</p>

◆ 선원법 [시행 21. 2. 19.]

◇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제도**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등을 신설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에 비하여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별칙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5조제1항, 제55조의2 신설).

나. **선박소유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55조

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중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4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 중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5 신설).

마.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의2 및 제129조의2 신설).

바.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제64조제6항 신설).

사.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 종전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60조).

선원법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선원법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2. (현행과 같음)</p> <p>23. 「<u>실습선원</u>」이란 「<u>선박직원법</u>」 제2조제4호의2의 <u>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p> <p>② <u>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u>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실습선원</u>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u>제10조까지</u>,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u>제10조까지</u>,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5조의2(금품 청산) <u>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p> <p>① <u>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신 설></p>	<p>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p> <p>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및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신 설></p>	<p>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p> <p>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선박소유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u></p>

	<p>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선박소유자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u>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② <u>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 중 한 차례의 휴식시간은 8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한다.</u></p> <p>③ <u>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u></p> <p>④ <u>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명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u></p>
<p>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 ⑤ (생략)</p> <p><신 설></p>	<p>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u></p>
<p>제124조(행정처분) ① ~ ③ (생략)</p> <p><신 설></p>	<p>제124조(행정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p> <p>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의2에 따른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등과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의 체결 등 선원실습 운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u></p> <p>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u></p>

	<p>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 17. (생략)</p>	<p>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u>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u></p> <p>4. ~ 17. (현행과 같음)</p>
<p>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7. (생략)</p> <p>8.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p> <p>9. ~ 18. (생략)</p> <p>② (생략)</p>	<p>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p> <p>9. ~ 1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선원법 시행령」[시행 21. 2.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제도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및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임금 등을 체불한 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의 내용·기간·방법과 공개 제외 대상,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제공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상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로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과 적용 제외 사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선박소유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을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함.

나.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의 내용·기간·방법과 공개 제외 대상(제17조의5 및 제17조의6 신설)

임금 등을 체불한 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시에는 선박소유자의 성명·나이·상호 및 3년간의 체불액 등을 3년 동안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 내에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와 제공 제외 대상(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신설)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성명·상호 및 요구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6호, 2019. 10. 8., 일부개정]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90호, 2021. 1. 12., 일부개정]
<p>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5.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p> <p>6.·7. (생략)</p>	<p>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p> <p>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p> <p>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p> <p>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p> <p>5. 실습선원</p> <p>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p>
<신설>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p><신 설></p>	<p>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u>연 100분의 20</u>을 말한다.</p> <p>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채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신 설></p>	<p>제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기간 등)</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p>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p> <p>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p>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신 설></p>	<p>제17조의6(채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p> <p>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채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채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채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내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채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채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가 채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신 설></p>	<p>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p> <p>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p> <p>2. 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신 설></p>	<p>제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p> <p>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2. 체불선박소유자가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p> <p>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p> <p>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p> <p>5.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④ (생략)</p> <p><신 설></p>	<p>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u>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u>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을</p>

<p>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공개·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p><신 설></p> <p><신 설></p> <p>② ~ ④ (생략)</p>	<p>설치한 선박을 말한다.</p> <p>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점검 5.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법 제1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공개·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선원법 시행규칙」[시행 21. 2.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선·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 신청 사유를 확대**하고, **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삭제**한

「보안업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신원확인 또는 신원조사 의뢰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다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68호, 2021. 2. 19., 일부개정]</p>
<p>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하선변경공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5조(신원조사)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발급과 관련된 행정진산망을 통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에 관한 서식을 신원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신 설></p>	<p>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p>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p> <p>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p> <p>① 선원당직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제3조에 따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당직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p> <p>1. 2.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p> <p>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 (생략)</p> <p>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후단 신설></p> <p>③ (생략)</p>	<p>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이 경우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1. 5. 19]</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① 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① 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 「선박직원법」 [시행 21. 4.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음주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면허취소 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 운항자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1차례 거부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 받게 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측정 순응자와의 형평성 및 법적 제재의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적 미비점 보완 및 제재 강화를 위해 **음주 운항자가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1회만 불응하더라도 해기사 면허를 취소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선박직원법 [법률 제1805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1. 7. 14]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부칙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1. 7. 14)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 21. 3.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선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때에 도선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 시 도선사면허를 취소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때에 도선한 경우 1차 위반시 바로 도선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선사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로 인한 해상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별표 2 II, 개별기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사안전법」 제 41 조 제 1 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 2 항 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9조제1항제 10호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21. 1.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59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31조(해양수산물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물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해양수산물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물관서,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해운법」 [시행 21. 4.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운법 [법률 제17065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운법 [법률 제1806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41조(재정지원) ①·② (생략) ③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p><신 설></p> <p><신 설></p>	<p>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 ③ (생략)</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1. 1. 1.]

해양수산부장관 ⇒ 관리청

§4~6, 10, 26, 26의3, 26의5, 27의2, 28의2 29의3, 34

<p>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p>	<p>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p>
<p>제2조(정의) ① ~ ⑥ (생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p> <p>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p> <p>2.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p>
<p>제27조의6(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p>	<p>제27조의6(과징금)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p>

<p>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항만법」 [시행 21. 6.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국가 간 무역 분쟁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항만법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항만법 [법률 제17620호, 2020. 12. 8., 일부개정]</p>
<p>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 설></p>	<p>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p>

<p>3. ~ 8. (생략) ② (생략)</p>	<p>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p>	<p>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p>

◆「항만법 시행령」[시행 21. 6.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 중 일부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우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762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정하고, 우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매출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조업자의 수출액 기준을 총매출액 대비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p>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p>	<p>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05호, 2021. 5. 25., 일부개정]</p>
<p>제70조(입주자격)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p>	<p>제70조(입주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p>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연구개발업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⑥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신 설>

⑦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 2.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⑨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1. 전자상거래업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 전기통신업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5. 정보서비스업
- 6. 연구개발업
-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⑧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

<p>2.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법 제5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의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p> <p>⑩ 관리기관은 제9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2.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p> <p>⑩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법 제5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의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p> <p>⑩ 관리기관은 제9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p>
<p>제71조(우선입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신 설></p>	<p>제71조(우선입주) ①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한다.</p> <p>②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한다.</p>

◆「어촌·어항법」[시행 21. 6.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시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어촌·어항법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어촌·어항법 [법률 제17749호, 2020. 12. 22., 일부개정]</p>
<p>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6.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신설></p> <p>③ ~ ⑥ (생략)</p>	<p>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장기 정책방향</p> <p>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p> <p>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p> <p>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p> <p>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p> <p>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 기본계획</p> <p>2.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어항정비계획</p> <p>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 개선계획</p> <p>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p> <p>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증</p>

<p>③ ~ ⑥ (생략)</p>	<p>진계획 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p>	<p>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p> <p>2.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p> <p>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p> <p>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p> <p>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8. (생략)</p> <p>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p> <p>② (생략)</p>	<p>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p> <p>10.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현행과 같음)</p>

◆ 「수산업법」(1) [시행 20. 12. 4]

<p>수산업법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p>	<p>수산업법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p>
<p>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p> <p>6. ~ 9. (생략)</p>	<p>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p> <p>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p> <p>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p>

<p>② ~ ⑤ (생략)</p>	<p>를」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p> <p>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p> <p>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 「수산업법」 (2) [시행 21. 3. 1]

<p>수산업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p>	<p>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 2020. 5. 26., 타법개정]</p>
<p>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② (생략)</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p> <p>3. 4. (생략)</p> <p>④·⑤ (생략)</p>	<p>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p> <p>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p> <p>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p> <p>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p> <p>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p> <p>④·⑤ (현행과 같음)</p>

◆ 「해양환경관리법」 (1) [시행 21. 1. 1]

<p>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p>	<p>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p>
<p>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p>	<p>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p>

<p>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 략)</p>	<p>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p> <p>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도지사</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생 략)</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③ ~ ⑦ (생 략)</p>	<p>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 「해양환경관리법」 (2) [시행 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

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8066호, 2021. 4. 13., 일부개정]
<p>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4. (생략)</p> <p>5.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p> <p>6. ~ 9. (생략)</p>	<p>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p> <p>6. ~ 9. (현행과 같음)</p>
<p>제122조(수수료) ① (생략)</p> <p>②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물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신설></p>	<p>제12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물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바, 해양폐기물의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18065호, 2021. 4. 13., 일부개정]
<신설>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p>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 11. 19]

<p>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8호, 2019. 9. 11., 일부개정]</p>	<p>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2020. 11. 19., 일부개정]</p>
<p>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물 승인) ① ~ ④ (생략) <신설></p>	<p>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물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p>
<p>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 ②·③ (생략)</p>	<p>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5조(연료유의 공급) ①·② (생략)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건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p> <p>④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p> <p><신설></p>	<p>제35조(연료유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건본을 보관해야 한다.</p> <p>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p> <p>④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건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p> <p>⑤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9조(정기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p>	<p>제39조(정기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한다.</p> <p>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의 서류에 한정한다)</p> <p>가. ~ 자. (생략)</p> <p>차.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이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라 한다)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p> <p><신설></p> <p>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생략)</p> <p>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 ⑤ (생략)</p>	<p>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에 한정한다)</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이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라 한다)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p> <p>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p> <p>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0조(중간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40조(중간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p>

	<p>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p>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1. 1. 1]

<p>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2020. 11. 19., 일부개정]</p>	<p>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51호, 2020. 12. 24., 일부개정]</p>
<p>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p> <p>① (생략)</p> <p>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별표 20의4와 같다.</p> <p><신 설></p> <p><신 설></p>	<p>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①</p> <p>(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p> <p>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p>
<p><신 설></p>	<p>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p> <p>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종류와 사용량(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p>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 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 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기간의 시작일·중간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한다)·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p>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p> <p>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p>
<p>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의 기준을 말한다.</p>	<p>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p>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p>

	<p>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p>
<p>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3서식과 같다.</p>	<p>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p>
<p>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날짜·시간·장소 및 고장 사항 나. 가목에 따른 고장 사항의 수리·대체 등 조치 내용 3. 법 제44조제3항제3호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짜·장소·수급량 및 해당 연료유의 황함유량</p> <p><신 설></p>	<p>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④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날짜·시간·장소 및 고장 사항 나. 가목에 따른 고장 사항의 수리·대체 등 조치 내용 3. 법 제44조제3항제3호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짜·장소·수급량 및 해당 연료유의 황함유량</p>
<p>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p>	<p>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p>

<p>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p>	<p>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p>
<p>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p>	<p>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p>